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02-2133-567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산하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
- ③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 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5.>

1. 서울특별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 단계의 안
 3. 서울특별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4.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5.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6.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8.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9.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10. 행정심판판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11.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12.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등
 13.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14.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15.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16.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이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

정 2017.1.5.>

1.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2.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3. 서울특별시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 및 이행 실적
 4.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
 5.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 서울특별시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6.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7.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8.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9. 감염병 발생현황
 10.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추이 및 현황,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의 점검 결과
 11.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와 당해 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공개내용 및 공개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5.>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회 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이의신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운영실태 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

제13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86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